

규칙공포

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

특별시

- 종합건설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리제상 물품출납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완장토록 조정

- 물품출납원 변경 : 경리과장 → 자재과장

001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지 / 전화 (02) 731-6156*8 / 전송 731-6562

취급		시	장
보존			
부	시	장	
기획관리실장			44
법무 담당관			3재
기안	법재계장		1984. 1. 10

44
3재
1984. 1. 10
시장

제목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공포

1.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부장관에게 사전보고 (93. 12. 29) 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.

규칙제 2509 호

첨부 : 규칙안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: 공보관

참조 : 공보1담당관

제목 :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시보에 게재 공포하기 바랍.

첨부 : 1.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2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 3 안)

수신 : 회계과장

제목 : 규칙공포 통보

1.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.

첨부 :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1부(생략). 끝.

검열
1984. 1. 11
공재관

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6~8 / 전송 731-6562

문서번호 법부 11150-57
 시행일자 1994. 1. 11
 (경유) (재 1 안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
취급		시 장
보존		
부 시 장	[인]	3/3
기획관리실장	[인]	44
법부 담당관	[인]	3재
기안	법제계장 [인]	111 시장 합조

제목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공포

1.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부장관에게 사전보고(93. 12. 29)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별첨안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.

규칙제 2589 호

첨부 : 규칙안 1부. 끝.

(재 2 안)

수신 : 공보관
 참조 : 공보1담당관
 제목 :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시보에 게재 공포하기 바랍.

첨부 : 1.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2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재 3 안)

수신 : 회계과장
 제목 : 규칙공포 통보

1.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.

첨부 :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1부(생략). 끝.

검열
 1994. 1. 11
 총재관

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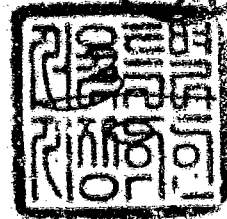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역서영규칙중개정

규칙

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

이 원



1994년 1월 15일

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

1. 개정이유

종합건설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의 직제상 물품출납업무의 대부분(자재등)을 담당하고 있는 실제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토록하여 물품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종합건설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의 물품출납원을 경리과장에서 자재과장으로 변경함(안 제2조제1항제2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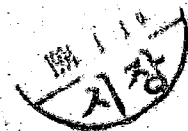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 : 의견없음

라. 기타 : 신.구조문 대비표(별첨)



서울특별시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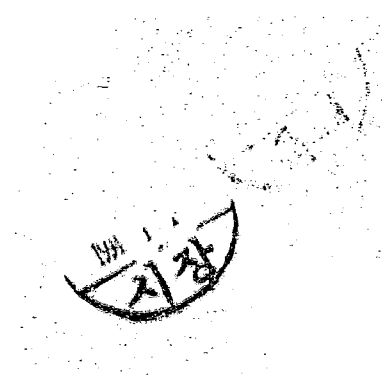
제2조제1항제2호의 물품출납원중 "종합건설본부, 지하철건설본부, 청소

사업본부 : 경리과장"을 "종합건설본부, 지하철건설본부 : 자재과장,

청소사업본부 : 경리과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관 계 법 규

- 지방재정법 -

제91조(물품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되,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.

-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-

제2조(관리책임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 (이하 "물품관리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(이하 "물품출납원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시장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(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)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.